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33865 판결 [점유회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1. R
2.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변론 종결 2016. 10. 13.

판결 선고 2016. 10. 27.

제 1 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3가단21423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과 R 및 선정자 S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과 R 및 선정자 S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R 및 주식회사 A, 선정자 S(이하 '원고들'이라 하고, 주식회사 A은 'A'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J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K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L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M은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5, 6,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O는 별지 5, 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Q는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N은 별지 6,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P은 별지 8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10,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1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G, E, F은 별지 1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H은 별지 1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는 별지 1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건축주들이 2012.3. 30.경 원고들의 점유를 최초로 침탈한 후 점유의 회수와 침탈을 반복하다가 W 등이 2012. 11. 3., 같은 달 9. 및 같은 달 11.에 이 사건 점유침탈행위를 하여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는바, 최초의 점유침탈행위가 W 등이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회복한 점유는 점유회수청구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선정당사자) R, 선정자 S이 각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2. 3. 30.경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4, 25, 28, 45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A은 2012. 2.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펜스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A의 대표이사 AE은 2012. 3. 21.경부터는 경비원 AF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업자 중 1인인 AG은 "AG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는 내용과 AG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현수막을 걸어 둔 사실, W는 2012. 3. 30. 이 사건 빌라 공사현장에서 펜스의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W는 A의 점유를 침탈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고정1171 사건에서 벌금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6노635호로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R, 선정자 S은 " 2012. 7. 23. 09:30경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도급인인 W로부터 받아낼 목적으로 직원 등 25명과 함께 W가 관리하는 이 사건 빌라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점거함으로써 W의 주택신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888 사건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005 사건으로 항소, 대법원 2015도2539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2. 3. 30. 무렵 A이나 AG 외에 원고(선정당사자) R, 선정자 S이 이 사건 빌라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A이 2012. 3. 30. 이 사건 빌라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 A이 이 사건점유침탈행위가 있을 당시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판사 설충민, 판사 송인경

선 정 자 명 단

1. R
2. 주식회사 A
3. S. 끝.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표 제 부 】 (1동리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연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01동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지층5층 상용주거(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2층 143.66㎡ 지1층 146.71㎡ 1층 14.61㎡ 3층 143.66㎡ 3층 133.92㎡ 4층 74.42㎡ 5층 74.42㎡	2014년5월29일 등기

(대지원리 목적인 토지라 표시)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대 대	380㎡ 136㎡ 96㎡	2014년5월29일 등기

【 표 제 부 】 (전용부분에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101동 제101호	철근콘크리트도 82.78㎡	2014년5월29일 등기

-이상-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01동	월간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층6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2층 140.85㎡ 지1층 146.71㎡ 1층 14.61㎡ 2층 142.66㎡ 3층 135.92㎡ 4층 74.42㎡ 5층 74.42㎡	2014년5월20일 등기

(대지연의 육적인 표시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대 대	380㎡ 136㎡ 26㎡	2014년5월20일 등기

【 표 제 부 】 (전용부분에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101동 제101호	월간콘크리트조 64.44㎡	2014년5월20일 등기

-이상-

별지 3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 표 제 부 】 (1층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통기권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01동	말단콘크리트조 평층복합주택5층 공동주택(아파트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2층 143.66㎡ 지1층 146.71㎡ 1층 14.61㎡ 2층 142.66㎡ 3층 139.30㎡ 4층 74.40㎡ 5층 74.40㎡	2014년5월29일 통기

(대지권의 특목인 표시에 표시)				
표시번호	소 개 지 번	지 목	면 적	통기권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지 권	300㎡ 134㎡ 26㎡	2014년5월29일 통기

【 표 제 부 】 (전용부분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통기권인 및 기타사항
1		제지하1층 제비302호	말단콘크리트조 66.96㎡	2014년5월29일 통기

-이상-

별지 4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표 제 부 】 (1동리 건물리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01동	철근콘크리트조 경유대브지층4층 상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간접경합시설(사무소) 지2층 143.86㎡ 지1층 145.71㎡ 1층 14.01㎡ 2층 142.86㎡ 3층 133.93㎡ 4층 74.98㎡ 5층 74.48㎡	2014년8월29일 등기

(대지원리 목적인 표시지 표시)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대 대	240㎡ 136㎡ 26㎡	2014년8월29일 등기

【 표 제 부 】 (전용부분리 건물리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83.39㎡	2014년8월29일 등기

-이상-

별지 5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절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201동	월근로크리드코 경승테크자랑6층 강동주회(아파트주회) 및 근반생원시설(사무소) 제2층 143.65㎡ 제3층 145.71㎡ 1층 14.81㎡ 2층 142.88㎡ 3층 133.92㎡ 4층 74.42㎡ 5층 74.42㎡	2014년5월29일 등기

(대지권과 목적인 표시의 표시)				
표시번호	소 개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지 권	200㎡ 136㎡ 96㎡	2014년5월29일 등기

【 표 제 부 】 (건물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절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2층 제202호	월근로크리드코 64.65㎡	2014년5월29일 등기

-이상-

별지 6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

【 표 적 부 】 (1동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연호	건 물 내 역	통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06동	월간포스트로 생활레크리텔5층 상용주력(다세대주택) 및 간편생활시설(사무소) 지1층 143.60㎡ 지1층 146.71㎡ 1층 14.61㎡ 2층 147.09㎡ 3층 153.92㎡ 4층 74.42㎡ 5층 74.42㎡	2014년5월29일 통기

(대지 및 목적지 표시)				
표시번호	소 개 지 번	지 목	면 적	통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대 대	280㎡ 138㎡ 99㎡	2014년5월29일 통기

【 표 적 부 】 (전용부분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통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3층 제301호	월간포스트로 89.72㎡	2014년5월29일 통기

-이상-

별지 7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표 지 부 】 (1층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104동	철근콘크리트 평상레크지형5층 상용주택(다세대주택) 및 단입상용사실(사무소) 지2층 143.86㎡ 지1층 145.71㎡ 1층 14.81㎡ 2층 142.85㎡ 3층 133.00㎡ 4층 74.40㎡ 5층 74.40㎡	2014년5월29일 등기

(대지면적 특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역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면 적	300㎡ 120㎡ 90㎡	2014년5월29일 등기

【 표 지 부 】 (전용부분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3층 제302호	철근콘크리트조 60.00㎡	2014년5월29일 등기

-이상-

별지 8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표 제 부 】 (1동차 건물지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명, 건물명명 및 번호	건 물 내 역	통기율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01동	철근콘크리트 강층복합지층5층 공동주택(아파트주택) 및 관련생활시설(사무소) 지2층 143.66㎡ 지1층 146.71㎡ 1층 14.61㎡ 2층 142.66㎡ 3층 133.32㎡ 4층 74.40㎡ 5층 74.40㎡	2014년5월29일 통기

(대지인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통기율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지 대	200㎡ 130㎡ 90㎡	2014년5월29일 통기

【 표 제 부 】 (전용부분지 인물의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통기율인 및 기타사항
1		제101동 제101호	철근콘크리트보조 60.51㎡	2014년5월29일 통기

-이상-

별지 9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 표 제 부 】 (1동지 건물지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02동	월근로스키드조, 평상대로지층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지1층 136.60㎡ 1층 12.66㎡ 2층 74.32㎡ 3층 74.32㎡ 4층 74.32㎡ 5층 69.16㎡	2014년5월29일 : 등기

(대지권일 목적임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지 지	380㎡ 136㎡ 06㎡	2014년5월29일 등기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지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102동 제101호	월근로스키드조 61.32㎡	2014년5월29일 : 등기

-이상-

별지 10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00동	월간콘크리트조 평층대표지붕5층 상동주택(가계다주택) 지1층 129.80㎡ 1층 12.06㎡ 2층 74.32㎡ 3층 74.32㎡ 4층 74.32㎡ 5층 40.18㎡	2014년5월29일 등기

(대지일원 전체에 표시)				
표시번호	소 개 지 번		지 목	면 적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지 대	380㎡ 138㎡ 96㎡

【 표 제 부 】 (전용부분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적허용 제비100호	월간콘크리트조 89.74㎡	2014년5월29일 등기

-이상-

별지 11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표 제 부 】 (1층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명, 건물명칭 및 연호	건 물 내 역	통기적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30동	철근콘크리트도 평상대조거층6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지1층 256.80㎡ 1층 12.66㎡ 2층 74.32㎡ 3층 74.32㎡ 4층 74.32㎡ 5층 69.15㎡	2014년5월29일 통기

【 표 제 부 】 (대지인원 특적인 표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 재 지 명	기 유	면 적	통기적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대 대	390㎡ 139㎡ 96㎡	2014년5월29일 통기

【 표 제 부 】 (건물부분의 건물에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통기적인 및 기타사항
1		제2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도 50.00㎡	2014년5월29일 통기

-이상-

별지 12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 >

【 표 계 부 】 (1동의 건물과 표시)				
표시번호	결 수	소재지명,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102동	셀컨트크리드오 영송래브지점5층 공동주택(가세합주택) 지1층 125.09㎡ 1층 17.96㎡ 2층 74.33㎡ 3층 74.32㎡ 4층 74.32㎡ 5층 69.15㎡	2014년5월29일 등기

(대지연립 목적인 표시의 표시)					
표시번호	소 개 지 번		지 역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300㎡	2014년5월29일 등기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130㎡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90㎡	

【 표 계 부 】 (권유부동산 건물과 표시)				
표시번호	결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3층 제301호	셀컨트크리드오 60.93㎡	2014년5월29일 등기

-이상-

별지 13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표 계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103동	월간공리리조트 팅글레프지동6층 합동주택(다세대주택) 지1층 135.39㎡ 1층 12.66㎡ 2층 74.32㎡ 3층 74.32㎡ 4층 74.32㎡ 5층 89.15㎡	2014년8월29일 등기

(매지원인 목적원 표시지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대 대	280㎡ 130㎡ 96㎡	2014년8월29일 등기

【 표 계 부 】 (전용부분의 건물지 표시)				
표시번호	집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4층 계403호	월간공리리조트 89.39㎡	2014년8월29일 등기

-이상-

별지 14

부동산의 표시

<피고 >

【 표 재 부 】 (1동의 건물지 표시)				
표시번호	필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100동	영단문크리프호 영숙대표지동6층 공동주택(아세대주택) 지1층 105.60㎡ 1층 12.65㎡ 2층 74.32㎡ 3층 74.32㎡ 4층 74.32㎡ 5층 60.15㎡	2014년5월29일 등기

【 표 재 부 】 (대지권외 특목선 표시지 표시)				
표시번호	소 개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서울특별시 용산구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대 대	300㎡ 130㎡ 30㎡	2014년5월29일 등기

【 표 재 부 】 (전유부분의 건물지 표시)				
표시번호	필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제6층 제021호	영단문크리프호 60.60㎡	2014년5월29일 등기

-이상-